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계약

1. 사고의 개요

1984년 7월7일 보험계약자 K와 S보험회사 사이에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한옥건물3동과 동 건물내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일체에 대하여 보험금액은 건물 4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된 바 있는데 그후 1986년 9월경 K는 거주하고 있던 위 건물을 임대하고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K의 가재도구일체도 위 보험의 목적소재지에서 신거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1987년 1월17일 22시 30분경 상기 보험의 목적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일부 소실되고 다세대주택건물에 살고있던 임차인 약20여명의 가재도구들이 소실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S사는 손해액 조사를 H손해사정회사에 이뢰하였으며 H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건물 1천5백만원, 가재도구 2천 8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K사는 위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건물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



이순관
(한국보험공사 조정과 대리)

급하였으나 임차인들의 가재도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에서 제외된다 하여 면책처리하자 K는 임차인들의 가재도구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당사자주장

보험계약자 K는 건물 임대차 관계에 있어 건물주인 자기가 임차인들에 대해서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특별히 보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차인들 소유의 가재도구를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토

록 위임받은 바 있고 아울러 S사의 보험모집인이 S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위와같은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받고 본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S사는 당연히 임차인의 소실된 가재도구에 대하여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S사는 임차인들의 가재도구가 보험 목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살펴볼 때 보험의 목적인 건물 및 가재도구의 소유자는 K로 명기되어 있어 임차인들을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K의 현거주지의 가재도구 현가액은 1천만원 이상이 되고 K와 임차인소유의 가재도구합계액은 4천만원이상 되는데 이보험계약의 가재도구에 관한 보험금액은 단지 1천만원인 점과 비교할 때 임차인들의 가재도구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3. 판정내용

본건을 심의한 분쟁심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차인들 소유의 소실된 가재도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S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우선 장기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S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들의 가재도구를 보상받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인 K와 S사이에 임차인들 소유의 가재도구를 보험의 목적에 포함시켜 임차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임차인들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증빙될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임차인들 소유의 가재도구가 보험목적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청약서등 제반관련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K와 S사이에 보험목적인 한옥 건물내에 분산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일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사실,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의 목적인 가재도구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인 K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과 이 보험계약이 청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체결되고 그후 동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본건 사고발생시에는 K 소유의 가재도구만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건이 타당하고, 달리 임차인들 소유의 가재도구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어 임차인들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4. 후설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즉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타인을 위한 계약은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등 일정한 내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이겠으나 위임을 받지 않고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의 내부관계는 보험계약성립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효조건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합의의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독일보험계약법 제80조나 스위스보험계약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단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의 보험계약도 당사자의 전의나 진실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상 임차인들을 위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감

안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타인을 위한 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일종 본건 보험계약을 K 자신을 위한 계약으로 보고 임차인들의 가재도구를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시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정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K는 보험계약 체결시 S사 소속 보험모집인이 임차인들의 가재도구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아울러 이와같은 내용을 동 모집인이 S사의 장기업무부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위 모집인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위 모집인의 사실확인서 진술내용이 S사로부터 제출된 반증자료에 비추어 쉽사리 인정하기가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며 그 결과로서 본건 계약체결 당시의 모집인의 진술행위에 따른 S사의 보상책임 발생여부에 관하여는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청약서양식중에는 피보험자성명 기재란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보험계약청약이나 체결시 보험계약자성명 정도만 기재하고 피보험자는 생략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여 본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후 누가 진정한 피보험자인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청약시 누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지를 명백히 청약서나 증권에 표시하여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업계에 당부하고자 한다. ■